

의안번호	2207021
의 퇴 인	문대림의원
회 답 일	2025.2.11.
추계번호	24D6488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10조의2 (조세 및 부담금 등의 감면)제1항 신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종합발전계획의 원활한 시행 과 주민의 경제적 부담 경감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는 국토외곽 먼섬 주민에 대하여 조세감면 등 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음	재량규정
2	안 제10조의2 (조세 및 부담금 등의 감면)제2항 신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종합발전계획에 반영된 개발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종합발전 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른 사업자에게 다음의 부담 금 등을 감면할 수 있음 1.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 면 점용료·사용료 3.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4.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5. 「소하천정비법」에 따른 유수·토지의 점용료 및 토 석·모래·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6. 「초지법」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	재량규정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10조의2(조세 및 부담금 등의 감 면)제1항 신설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 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안 제10조의2(조세 및 부담금 등의 감 면)제2항 신설	

2. 상세 사유

□ 국토외곽 먼섬¹⁾ 주민 조세 감면(안 제10조의2제1항 신설)

- 개정안에 따라 국토외곽 먼섬 주민에 대하여 조세감면 등 세제상의 지원을 하는 경우 재정수입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다만, 개정안의 내용만으로 조세 감면대상, 감면요건, 감면율 등을 예측하기 어렵고, 이를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그 밖의 조세 관련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현시점에서 재정수입 감소분을 합리적으로 추정하는 데 한계가 있음

[참고자료] 국토외곽 먼섬 현황

□ 사업자 부담금 감면(안 제10조의2제2항 신설)

- 개정안에 따라 국토외곽 먼섬 종합발전계획에 따른 사업자에게 부담금 등을 감면하는 경우 재정수입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다만,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올해 1월 관련 연구용역을 마쳐 연내 ‘국토외곽 먼섬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므로, 현시점에서는 구체적인 사업의 내용과 부담금 등의 감면 대상인 사업자 등을 추정하기 어려워 재정수입 감소분을 추계하기 곤란함

1) 동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국토외곽 먼섬"이란 사람이 정주하는 섬으로서 다음 각 호의 섬을 말한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본도(本島)는 제외한다.

1. 육지에서 50km 이상 떨어진 섬
2.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직선 기선을 정하는 기점이 되는 섬
3. 그 밖에 항로거리 등 섬 접근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섬

동법 시행령 제2조(국토외곽 먼섬)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섬"이란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직선 기선까지의 거리가 10킬로미터 이하인 섬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섬을 말한다.

1. 육지까지 항로(「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의 항로를 말한다)의 최단거리가 50킬로미터 이상인 섬
2. 정기적으로 운항(일정한 항로와 일정표에 따라 운항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는 여객선(「해운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여객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없는 섬
3. 정기적으로 운항하는 여객선의 운항빈도가 낮아서 섬 접근성이 낮다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섬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보	과장
행정비용추계과	강아름	김안나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김안나	02-6788-4664	krm7839@nabo.go.kr

[참고자료] 국토외곽 먼섬 현황²⁾

□ 육지에서 50km 이상 떨어진 섬 : 27개

No	시도	시군	섬이름	육지와최단거리 (km)	인구(명)
1	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도	164	4,875
2	인천광역시	옹진군	대청도	160	1,201
3	인천광역시	옹진군	소청도	155	221
4	인천광역시	옹진군	연평도	73	1,981
5	인천광역시	옹진군	소연평도	72	104
6	전라남도	진도군	동거차도	50	119
7	전라남도	진도군	서거차도	51	98
8	전라남도	진도군	상하죽도	50	12
9	전라남도	진도군	맹골도	58	93
10	전라남도	진도군	죽도 (조도면)	57	39
11	전라남도	진도군	곽도	59	21
12	전라남도	신안군	대흑산도	77	1,719
13	전라남도	신안군	장도	81	80
14	전라남도	신안군	영산도	72	50
15	전라남도	신안군	대둔도	73	279
16	전라남도	신안군	상태도	92	69
17	전라남도	신안군	중태도	93	11
18	전라남도	신안군	하태도	92	116
19	전라남도	신안군	만재도	86	70
20	전라남도	신안군	다물도	75	194
21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도	136	9,042
22	경상북도	울릉군	죽도	144	1
23	경상북도	울릉군	독도	218	34
24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비양도	102	140
25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우도	95	1,618
26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가파도	127	216
27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마라도	132	89

2) 자료: 행정안전부

□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직선의 기선을 정하는 기점이 되는 섬 : 7개

No	시도	시군	섬이름	수역	기점	인구(명)
1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어청도	서해안	북위 36도 07분 16초 동경 125도 58분 03초	262
2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상왕등도	서해안	북위 35도 39분 36초 동경 126도 06분 01초	50
3	전라남도	여수시	거문도	남해안	북위 34도 00분 17초 동경 127도 19분 28초	485
4	전라남도	영광군	횡도	서해안	북위 35도 20분 12초 동경 125도 59분 05초	3
5	전라남도	완도군	여서도	남해안	북위 33도 58분 06초 동경 126도 55분 26초	100
6	전라남도	신안군	홍도	서해안	북위 34도 40분 29초 동경 125도 10분 22초	439
7	전라남도	신안군	가거도 (소흑산도)	서해안	북위 34도 02분 49초 동경 125도 07분 22초	386

□ 그 밖에 항로거리 등 섬 접근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섬: 9개

- 육지까지 항로(「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의 항로를 말한다)의 최단 거리가 50킬로미터 이상인 섬 : 6개

No	시도	시군	섬이름	직선기선부터의 거리(km)	항로거리(km)	인구(명)
1	전라남도	여수시	동도	4.9	94.9	246
2	전라남도	여수시	서도	2.3	95.9	596
3	전라남도	영광군	안마도	3.9	63	180
4	전라남도	영광군	대석만도	4.2	50	11
5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상추자도	9.7	78	922
6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하추자도	8.3	69	635

- 정기적으로 운항(일정한 항로와 일정표에 따라 운항하는 것을 말함)하는 여객선(「해운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여객선을 말함)이 없는 섬 : 2개

No	시도	시군	섬이름	직선기선부터의 거리(km)	여객선 운항 횟수	인구(명)
1	충청남도	보령시	황도	6.8	미운항	2
2	전라남도	영광군	죽도	0.9	미운항	4

- 정기적으로 운항하는 여객선의 운항빈도가 낮아서 섬 접근성이 낮다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섬 : 1개

No	시도	시군	섬이름	직선기선부터의 거리(km)	여객선 운항 횟수	인구(명)
1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하왕등도	2.3	주1회	22